

#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7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3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안전관리자문위원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김포시 안전관리 자문을 희망하는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원활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관리자문위원 거주지 제한 요건 삭제(안 제3조)
- 나. 불일치 조항 본문에 맞게 수정(안 제7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 : 생략(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)
  - 2) 부서협의 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  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 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   - 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, 재난안전점검과
    - 나) 경기도 : 안전기획과

##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” 를 “민간전문가” 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” 을 “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안전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안전담당관 김광식
	팀장 직위·성명	안전점검팀장 김종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유형석(☎2919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<u>시에 거주하</u> <u>는 민간전문가</u>로 단장과 부단장 각 1 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어 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· ③ (생   략)</p> <p>제7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· ② (생   략)</p> <p>③ <u>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<u>민간전문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*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

- 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 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1.4)

**제2조(기능)**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2. 건축물, 교량 ·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3.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4.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5.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
6.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
**제3조(구성)** 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9.30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5.9.30)

1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또는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) (개정 2015.9.30)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(개정 2008.1.4)
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(개정 2015.9.30)

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.

**제4조(임기)**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)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

**제5조(단장과 부단장의 직무)**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자문단 회의)** 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

있다.

1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**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·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위촉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기관장이 추천한 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할 수 있다. (신설 2015.9.30)

**제8조(의견청취)**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안전점검 및 상담실시)**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결과보고)**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의록 등)**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회의안건,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간사와 서기)**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안전점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 담당자가 된다. (개정 2015.9.30)

**제13조(수당 등 지급)**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안전점검 ·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자문 및 안전점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)

**제14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